

2023학년도 제1학기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

교직지원센터

1.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

구분	주요 원칙 및 내용		비고
이수 대상	비사범계 교직과정	2회 이상: 3년 이하의 교원 양성과정 적용	
	2021학년도 입학자부터	4회 이상: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적용	
	재학생	2회 이상: 2021.02.09. 기준 잔여 학기가 3학기 이상인 재학생	
	편입학/재입학/복학자	동일 학년의 입학년도 기준 적용	

2. 성인지교육 1회 인정 기준

구분	교육내용 (예시)
1차시	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폭력 예방교육
2차시	가정·학교·사회 속 성인지감수성 및 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
3차시	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감수성 및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 및 교육 내용
4차시	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/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

4개 차시를 모두 이수하여야 1회 교육 인정 (1회당 1시간, 총 4시간)

3. 성인지교육 이수 가능 프로그램 안내

구분	신입생 맞춤형	학과 맞춤형	교육실습 맞춤형	공통 (별도 특강)
이수대상	신입생 및 편입생	제한 없음	해당 학기 학교현장실습 또는 교육봉사활동 1·2 이수자	제한 없음
이수방법	미래교사와 의사소통 수강신청 후 교과목 내 특강 이수	미래교사와 학교현장 수강신청 후 교과목 내 특강 이수	수강 대상자 안내 샘물 PUSH 발송 별도 신청 없이 안내 일자에 교육 참여	별도 신청 (신청기간 샘물 PUSH 안내)
수업방식	외부전문가 특강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			
이수내용	1차시.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폭력 예방 교육 2차시. 가정·사회·학교 속 성인지감수성 및 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3차시.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감수성 및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 4차시.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/생활지도 고려사항,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※ 4개 차시를 모두 이수하여야 1회 교육 이수로 인정 (1회당 1시간, 총 4시간 이수)			
인정기준	미래교사와 의사소통 수업 이수	미래교사와 학교현장 수업 이수	교육 4시간 모두 참여	

특강 참여로 인한 결석 시 공결 처리 가능

(공결 관련 절차는 교육 당일에 안내, 교육 종료 후 공결 신청 가능)

4. 성인지교육 이수 횟수 관련 안내

ex 1. 2022학번이고 이번 학기 교육봉사활동 1을 신청했는데 신입생 맞춤형 교육(미래교사와 의사소통 교과목)만 이수한 경우

=> 재학 중 총 3회를 이수하여야 함 (1년에 1번 필수)

=> 이번 학기 교육봉사활동 1을 신청하였으므로 교육실습 맞춤형 성인지교육 수강 가능
(2023.03.23.&2023.03.24.)

=> 3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, 총 3가지 선택지 중 금년도에 1개 실행

- 1) 2023학년도 제2학기에 교육봉사활동 2 수강신청 하고 교육실습 맞춤형 수강하기
- 2) 2023학년도 제2학기에 미래교사와 학교현장 수강신청하고 학과 맞춤형 수강하기
- 3) 2023학년도 제1학기 또는 2023학년도 제2학기에 별도 특강 신청하고 수강하기

※ 재학 중 이수 프로그램이 겹치면 안 됨! 금년도에 교육실습 맞춤형을 수강하면 앞으로는 교육실습 맞춤형 성인지교육을 이수할 수 없음

ex.2 2019학번 또는 2020학번이고 이번 학기 교육봉사활동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내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에 나갈 계획인데 이미 별도 특강을 이수한 경우

=> 재학 중 총 2회를 이수하여야 함 (1년에 1번, 이수 횟수는 샘물 포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)

=> 별도 특강은 이미 이수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수할 수 없음

=> 이번 학기 관련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지 않았으므로, 총 2개의 선택지 중 금년도에 1개 실행

- 1) 교육봉사활동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, 2023학년도 제2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신청하고 교육실습 맞춤형 수강하기
- 2) 교육봉사활동을 이미 수강한 경우, 2023학년도 제2학기에 미래교사와 학교현장을 수강신청하여 학과 맞춤형 교육 이수하기

※ 학교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기에 반드시 성인지교육(교육실습 맞춤형)을 이수하여야 하며, 학교현장실습 학기에 성인지교육 이수 계획이 없다면 반드시 2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신청+성인지교육 이수를 진행하여야 함

위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어 성인지교육 이수 내용을 판단해 주십시오.

1년에 한 번씩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므로, 학생이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.

관련 문의는 교직원지원센터로 연락 주십시오. (02-2287-5089)

감사합니다.